

2022학년도

제6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23년 1월 16일(월) 13:30

2. 장 소 : 화도관 대회의실

3. 대학평의위원회(12명)

■참석의원 : 권인철, 정용식, 이강훈, 유경선, 강성률, 천성오, 김태헌,
송영균 김민수, 반중혁 (10명)

■불참의원 : 정동훈, 양근제 (2명)

4. 안 건

가. 자문 : 규정 제·개정(안)

안 건		상정부서
1.	직원인사 규정 개정(안)	총무팀
2.	직원보수 규정 개정(안)	
3.	직원 인사위원회 규정 개정(안)	
4.	원격수업 운영 규정 개정(안)	성과관리팀
5.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 인사 규정 개정(안)	산학협력단
6.	지능형로봇혁신공유대학사업단 운영 규정 제정(안)	지능형로봇혁신공유대학 사업단

나. 자문 : 2022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다. 자문 : 2023학년도 본예산(안)

라. 보고 : 2023학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 부담(안)

5. 회의 내용 및 회의 결과

【제9대 대학평의위원회 위촉장 수여】

- 김재요 처장(이하 '기획처장')이 총장 부재로 인하여 제9대 대학평의위원회 위촉장을 대신하여 수여하다.

- 정동훈 의장이 외국 출장 일정으로 본 회의 불참에 따라, 권인철 부의장(이하 '부의장')이 참석의원의 동의를 얻어 회의를 시작하다.
- 부의장이 성원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하다.
 - 총원 12명 중 10명 참석
- 부의장이 학생대표 선출에 따른 대학평의원회 의원 변경을 설명하고, 학생대표 2인을 소개하다.
- 부의장이 대학평의원회 심의 의결방식을 설명하고, 회의를 주관하다.

【자문 : 규정 제·개정(안)】

1) 직원인사 규정 개정(안)

- 오준희 팀장(이하 '총무팀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2022학년도 단체협약 체결 후속조치로 직원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 주요 내용
 - 제34조(구성 및 기능) : 위원장 및 궐위 시 대행자 변경
 - 직원인사위원회 위원장 변경 : 부총장 → 총무처장
 - 총무처장 궐위 시 기획처장, 관리처장 순으로 위원장 역할로 변경
- 의원 전원이 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동의하다.

2) 직원보수 규정 개정(안)

- 총무팀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2022학년도 임금협약 체결 후속조치로 야간근무수당 금액 변경
- 주요 내용
 - 제33조(야간근무수당) 및 [별표11] 개정
 - 야간근무수당 변경 : 월 8만원 → 월 9만원
- 의원 전원이 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동의하다.

3) 직원 인사위원회 규정 개정(안)

- 총무팀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2022학년도 단체협약 체결 후속조치로 직원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 직원 인사위원회 의결요건 신설
- 주요 내용
 - 제2조(구성 및 임기) : 위원장 및 위원장 대행자 변경

- 직원인사위원회 위원장 변경 : 부총장 → 총무처장
- 총무처장 궐위 시 기획처장, 관리처장 순으로 위원장 역할 수행
- 제3조(회의) : 회의 의결요건 신설
 -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의원 전원이 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동의하다.

4) 원격수업 운영 규정 개정(안)

- 이상주 팀장(이하 '성과관리팀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정규수업 전면 대면수업 원칙과의 비례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절학기 수업 원격수업 교과목에 포함함
 - 원격수업 만족도 조사의 보다 효율적으로 일원화된 업무수행을 위해 담당 부서를 변경함
- 주요 내용
 - 제10조(담당교수 임무 및 제한) 제3항제2호 삭제
 - 학기 중 정규수업(대면수업)과의 형평성을 고려 및 학교차원 총괄적인 개설과목 질 관리 차원에서 계절학기 수업 예외 인정조항 삭제
 - 제3항제2호를 삭제하여 계절학기 개설 원격수업 교과목도 원격수업 개설 제한 강좌 수에 포함하도록 개정
 - 제17조(교육만족도조사) : 담당부서명 변경
 - 효율적인 일원화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격수업 교육 만족도 조사 실시 부서를 "교수학습센터"에서 "성과관리팀"으로 변경
- 부의장이 기획관리위원회 안건으로 논의한 주요사항을 요약하여 설명을 기획처장에게 요청하다.
- 기획처장이 2023학년도 1학기 원격수업 개설이 완료되어 이에 미치는 영향과 1년에 개설하는 총 개설 과목수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설명하다. 개인이 관리하는 총 개설과목에 원격수업을 포함해야 한다는 교과과정심의위원회 논의사항을 설명하였고, 개정(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없었음을 설명하다.
- 김태헌 의원이 총괄적인 개설과목의 질 관리 차원에서 삭제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원격수업으로 수업의 질이 저하되었다는 만족도 조사 결과의 내용이 있었는지 질의하다.
- 성과관리팀장이 시행 초기 제도여서 만족도 조사 올해 처음 시행하였고, 현재 이를 분석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향후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배포할 예정임을 답하다.
- 부의장이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학생 및 구성원 대상으로 배포할 계획인지 질의하다.
- 성과관리팀장이 원격수업관리위원회에 학생 3인이 포함되어있어 여기서 보고

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3학년도 1학기 원격수업 110개 개설강좌의 담당 교수에게 우선 배포하고 학과에 공개할 예정임을 답하다.

- 김태헌 의원이 계절학기 수업에 원격수업을 포함을 시켜 제한하는 것이 학생 입장에서 더 많은 교육의 기회, 학습권을 제한하는 것임을 제기하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되어있는지 질의하다.
- 성과관리팀장이 원격수업 시행 초기로 비대면수업을 확산하여야 할 지 여부는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내용이 쌓여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학의 정책 방향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부분임을 설명하다.
- 강성률 의원이 강사는 원격수업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제한되는지 질의하다.
- 성과관리팀장이 14쪽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결정으로 비전임교원에게도 허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2022학년도에도 이를 허용하고 있음을 답하다.
- 천성오 의원이 교육혁신원의 교육 만족도 조사의 내용 중에 비대면 형태의 원격수업 및 교원에 대한 평가가 있는지 질의하다.
- 성과관리팀장이 비대면수업과 대면수업이 비슷한 만족도 결과로 조사되었음을 답하다.
- 김태헌 의원이 제10조제3항제2호가 삭제되면 학생 입장에서는 원격수업에 대한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제10조제3항의 학기당 개설 제한강좌 수를 완화해줄 수 있는지 질의하다.
- 성과관리팀장이 2023학년도 1학기 신청 강좌수를 설명하고(회의 참고자료), 교원기준 이 외에 학과 제한과목 기준이 총 개설과목의 20% 이내인 점을 설명하다. 이에 2023학년도 1학기 신청 강좌가 전체 강좌의 20%를 넘지 않고 있음을 설명하다. 향후 원격수업에 대한 개설 수요가 증가한다면 학교차원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답하다.
- 부의장이 논의된 사항을 원격수업 운영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해당 규정을 정비할 것을 자문하다.

5)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 인사 규정 개정(안)

- 장수웅 팀장(이하 '경영관리팀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산학협력단 설립(2004.02) 이후 평균 근속연수 증가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 필요
 - 2개 직급 간 정원 공유를 통한 유연한 인사관리 운영체계 마련
- 주요 내용
 - 제47조(정규직 직원의 구분 및 정원 등) 및 [별표1] 직종별 직위, 직급 및 정원표 개정
 - 2개 직급(4~5급, 6~7급, 8~9급)간 정원 공유
 - 직급별 정원 조정(8~9급 정원 2명 감소, 4~5급 및 6~7급 정원 각 1명

증가)

- 부의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유경선 의원이 개정 이후, 추가적으로 다시 직급을 묶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인지 이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지 질의하다.
- 경영관리팀장이 향후 10년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답하다.
- 유경선 의원이 산학협력단의 직원 직급체계가 대학의 직급 체계와 유사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질의하다.
- 경영관리팀장이 대학과 연계된 업무를 수행하는 점과 직원의 산학협력단 발령 등이 최근까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대학과 유사한 직급 체계로 되어있음을 설명하다.
- 김민수 의원이 산학협력단은 별도 조직으로 대외협력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산업계와 유사한 직급 형태가 맞지 않은 지 제기하다. 또한 일반 산업계의 직급 삭제 및 매니저, 주임 직급, 무직급 등의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함을 부연하다.
- 부의장이 산학협력단의 업무 특성상 사업성 및 영업성이 중요하므로 정원을 개정(안)과 같이 유연하게 가져가는 점이 향후 인력체계 변경에 대한 논의의 시작점이 아닌지 설명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추후 진행하여 줄 것을 자문하다.

6) 지능형로봇혁신공유대학사업단 운영 규정 제정(안)

- 최용훈 교수(이하 '부단장')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제안이유
 - 우리대학이 「디지털신기술인재양성혁신공유대학사업」의 참여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2021년 지능형로봇혁신공유대학사업단이 본교 직제 신설
 - 또한 운영 및 집행에 관련된 사항도 본교 규정으로 정의되어야 하나 누락되어 내부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어 본교 규정으로 제정하고자 함
 - 본 사업이 공유학사제도와 전공선택제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바 위원회 및 협의체를 통한 의사결정 및 심의가 필요하므로 각 조직별 내규를 마련하였으나, 본교 규정 제정을 위해 중복되는 내규 4개를 폐지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제정하는 규정에 각 조항으로 명시
- 주요 내용
 - '지능형로봇혁신공유대학사업단' 직제 신설(2021.8.24.)에 따른 운영규정 제정 및 정비
 - 제1장 총칙
 - 제2장 사업단 구성 및 운영
 - 제3장 사업비 운영 및 집행.관리
 - 제4장 보칙
- 부의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수정한 주요사

항을 설명하다.

- 부의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김민수 의원이 제5조제2항에서 1~3호에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있지 않는지 질의하다.
- 부단장이 해당 사항이 별도 내규에 있음을 답하다.
- 부의장이 제정 이후, 향후 규정 개정 시에 이를 보완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 유경선 의원이 제4조제3항 권한과 책임에서 인사 추천 및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사항 등은 세부사항이 없는지 질의하다.
- 부단장이 해당 사항이 별도 내규에서 이를 규정함을 답하다.
- 부의장이 제11조 운영세칙 등이 내규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본 운영 규정은 사업을 하는 타 대학과 동일한 범위에서 제정하고, 세부 사항은 내규에서 반영하여 줄 것을 자문하다.

【자문 : 2022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7) 2022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 최창호 팀장(이하 '기획예산팀장')이 2022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의 주요 증감내역을 중심으로 설명하다.
- 반중혁 의원이 연구학생경비 증감현황을 질의하다.
- 기획예산팀장이 전년 대비 금액이 아닌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증감현황임을 설명하고,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사업 종료로 후속사업을 수주할 경우에는 예산을 원복하는 것임을 의미함을 부연하다.
- 반중혁 의원이 1차 추경과 2차 추경에서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연구학생경비와 보수 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기획예산팀장이 보수 부분은 전임교원 퇴직 및 신규교원 충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였음을 설명하다.
- 의원 전원이 내용에 대해 동의하고, 원안대로 자문하다.

【자문 : 2023학년도 본예산(안)】

8) 2023학년도 본예산(안)

- 기획예산팀장이 2023학년도 본예산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의 주요 증감내역을 중심으로 설명하다.
- 김태현 의원이 2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입학금 폐지하여 0원이 아니라 등록금 내에 포함하여 잡기로 하였는데 이 부분이 반영된 것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입학금이 폐지되고 수업료에서 증가하였으므로 입학금은 감소로 표현된 것이나 학부 수업료에서 전체로 보면 변함이 없음을 설명하다.

- 천성오 의원이 학교에서 예상하는 적자 규모와 미사용 차기이월금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더불어서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추가예산이 반영된 것인지 질의하다.
- 기획예산팀장이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추가 예산지원의 확정 문서를 받은 것이 없으므로 전년 대비 편성하였고, 추후 다시 확정되면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 편성할 예정임을 답하다. 현재 결산이 나와야 정확한 적자 규모 등을 알 수 있음을 부연하다.
- 기획처장이 이월자금은 최소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며, 사립학교법 등의 관련 법령에서 등록금 이월에 대한 사항은 엄격히 제한하므로 이에 적절하게 맞추고 있음을 추가 설명하다.
- 김태현 의원이 한울관의 냉난방기 고장 및 노후화에 대한 시설 정비 관리비용이 포함된 것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추경예산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2023학년도 약 20억 예산을 계획하였고, 옥의관 창틀 및 각 건물의 냉난방기 등을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예산 계획임을 설명하다.
- 천성오 의원이 교직원 인건비가 7년간 인상되고 있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을 제기하다.
- 강성률 의원이 특별전임교원의 임금에 대한 고민과 처우 개선이 필요함을 제기하다.
- 의원 전원이 내용에 대해 동의하고, 원안대로 자문하다.

【보고 : 2023학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 부담(안)】

9) 2023학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 부담(안)

- 최창호 팀장(이하 '기획예산팀장')이 제안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법인부담금) ①에 의거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2023학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 부담내역 및 증가사유는 회의자료와 같다.
- 의원 전원이 내용에 대해 동의하고, 원안대로 자문하다.

6. 폐 회

의장이 상정된 안건 심의를 마친 후 폐회를 선언하다.

불 임 : 회의자료 1부. 끝.

2023년 1월 16일

이상의 회의 내용을 확인함.

의 장 정 동 훈 (서명)

부 의 장 권 인 철 (서명)

평 의 원 정 용 식 (서명)

평 의 원 이 강 훈 (서명)

평 의 원 유 경 선 (서명)

평 의 원 강 성 료 (서명)

평 의 원 천 성 오 (서명)

평 의 원 양 근 제 (서명)

평 의 원 김 태 현 (서명)

평 의 원 송 영 균 (서명)

평 의 원 김 민 수 (서명)

평 의 원 반 중 혁 (서명)